



특례대출금의 상환면제에 관한 공지는 받으셨습니까?

특례긴급소액자금, 특례종합지원자금(첫회 대출, 연장 대출, 재대출)의 상환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누가 면제신청할 수 있습니까?

①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의 주민세(균 등할 · 소득할 모두)가 비과세인 대출받은 분 및 세대주



② 고령자만 거주하는 세대 등에서
※상환 개시 이후 12개월분 이상 체납이 있다 + 분납 등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증가 + 주민세의 「소득 할」이 비과세되고 있다.



③ 정신보건복지수첩(1급) 또는 신체장애수첩(1급 또는 2급)을 교부받은 분



④ 생활 보호를 수급하신 분



어떤 자금종류가 면제됩니까?

① 에 해당하는 분은 2022년3월까지의 특례긴급소액자금 (첫회), 특례종합지원자금 (첫회)에 대한 신규신청
※2022년4월 이후의 신규신청분은, 2023년 이후부터 상환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특례종합지원자금의 「연장대출」과 「재대출」은 이번 상환면제 신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②~④ 에 해당하는 분은 특례긴급소액자금, 특례종합지원자금(첫회대출, 연장대출, 재대출)

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① 에 해당하는 분은, **8월 31일까지**



②~④ 에 해당하는 분은,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.



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, 8월 31일까지 상환금 이체에 이용하는 은행계좌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.

주의사항

※이미 상환된 금액은 상환 면제되지 않습니다.
※면제를 받는 분도 면제를 받을 수 없는 분도 수속을 해야 합니다.



문의처

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

홋카이도 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 특례사무센터
0120-540-085 (수신자 부담전화)
월~금 9: 00~18: 00 (일본어만)

상환면제 요건 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

개인긴급소액자금 · 종합지원자금 상담 콜센터
0120-46-1999 (수신자 부담전화)
월~금 9: 00~17: 00 (일본어만)

통역이 필요한 경우는,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.

월~금 9:00~12:00, 13:00~17:00

영어, 중국어, 한국어, 베트남어, 타갈로그어, 태국어, 러시아어, 스페인어, 포르투갈어, 네덜어, 인도네시아어, 미얀마어, 크메르어로 상담 가능합니다.

